

# 심사 안건

## 1 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한 2018년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정산서에 대한 심의(승인)의 건임

### 1.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8. 1 ~ 5월 (5개월)
- 추진경과
  - 2017. 2. 7.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승인(운영위)
  - 2017. 12. 14. '18년도 의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통보
  - 2018. 1. 23.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 2건 등록 심의·승인(운영위)
  - 2018. 5. 23. 연구활동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각 연구모임 → 의장)
- 사업비 : 14,000,000원(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액 9,744,200원(69.6%)
  - 활동기간 6월 이하는 3,000,000원 지원
  -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연차모임( '17년 500만원 '18년 300만원)
- 등록현황 : 3개 연구모임, 회원 38명(의원 19명, 전문가 등 19명)

연번	등록일	모임명	대표의원	회원 (의원)	소관상임위
		3개 연구모임		38 (19)	
1	'17. 2. 7.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유병국	13 (5)	농경환위
2	'18. 1.23.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김문규	16 (8)	농경환위
3	'18. 1.23.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이공휘	9 (6)	행자위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연차 연구모임(2017.2 ~ 2018.5)

## 2. 주요 활동실적

○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 총 10회 실시

연구모임명	활동실적(회)			
	계	간담회 (협의회)	토론회 및 워크숍	현장방문
3개 모임	10	5	3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6	3	1	2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2	1	1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2	1	1	-

## 3. 예산 집행현황

(1) 연구모임별 집행 현황

○ 3개 연구모임 지원예산 총 14,000천원 중 9,744천원 집행(집행율 69.6%)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17.2.7. ~ '18.5.31.)은 연차 연구모임

(단위 : 천원)

연구모임명	지원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비고 (집행률:B/A)
계	14,000	9,744	4,256	69.6%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8,000	3,988	4,012	49.9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3,000	2,996	4	99.9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3,000	2,760	240	92.0

## (2) 집행항목별 현황

- 간담회 경비(식비, 숙박 등) 35.1%, 인쇄비 29.5%(워크숍자료 및 활동 보고서 등), 참석 수당 및 여비 23.6%, 기타(현수막, 사무용품 등) 11.8%순으로 집행

(단위 : 천원)

집행 항목	집행액(천원)	비중	비고
계	9,744	100%	
간담회 경비(식비, 숙박 등)	3,423	35.1%	
인쇄비(워크숍자료 및 연구활동 보고서)	2,872	29.5%	
참석수당 및 여비(외래강사비 포함)	2,302	23.6%	
기타(현수막, 사무용품 등)	1,147	11.8%	

※ 연구모임별, 항목별 집행현황 붙임 참고

## 4. 심의(승인)해 주실 사항

- 연구모임별 활동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목적 달성 여부 등
  - 연구모임별 활동 및 사업비 집행 현황(붙임 자료 참고)
  - 연구모임별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별첨 자료 참고)
- ※ 6개 연구모임은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7.31 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완료(12.31 한, 각 15부)

### <참고> 관련규정 발췌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연구모임 등록의 취소) ① 의장은 등록 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승인없이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과제 외의 연구활동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순 서

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②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③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참고]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3명(의원 5, 전문가 8)
  - 대 표 : 유병국 의원
  - 간 사 :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회 원 : 김종필 의원, 김명선 의원, 윤지상 의원, 조길행 의원, 이동순(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 안용주(선문대학교 교수), 김병국(충남국제교류협회 회장), 최태연(충남국제교류협회 사무총장), 이응기(공주대학교 교수), 김진우(한서대학교 교수), 이충영(나사렛대학교 교수)
- 연구목적 :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이후 자국 보호주의가 예상되고 한국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대중국 교역이 위축되는 등 국제 통상 및 문화, 예술 교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
- 등 록 일 : 2017. 2. 7.
- 연구회 운영지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충남의 국제교류
- 연구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5월(16개월)
- 예 산 액 : 8,000천원
  - 17년도 : 5,000천원
  - 18년도 : 3,000천원

○ 활동내용

- 충청남도 국제교류 역사와 현황 및 발전방향
- 서산시 대산항, 당진시청, 고성군 디카시 연구소 등 현장방문
- 심도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3. 활동결과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창립총회	2017.2.16.(목) 16:00~ 도의회 회의실	· 창립총회, 구성원 상견례 및 안내	
2차 회의	2017.4.12.(수)16:00~ 공주한옥마을 세미나실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	
현장방문	2017.11.21.(화)10:00~ 대산항, 당진시청, 고성군 디카시연구소	· 대산항 여객터미널 방문 · 당진시청 국제교류 우수사례 탐방 · 고성군 한중 디카시 국제 페스티벌 참석	
3차 회의	2017.12.15.(금) 11:00~ 농경위 회의실	· 2017년 연구모임 운영결과에 대한 토론 · 2017년 한해 연구모임 활동 회고 및 질의 답변 · 연구모임 운영진에 대한 격려와 감사	
4차 회의	2018.2.28.(수) 10:00~ 농경위 회의실	· 국제교류 활성화는 충남 사회발전과 연관 · 민간 국제교류 촉진 방안 토론 · 국제교류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 신설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교역 위축에 대응하여 국제교류 활성화의 방향 제시

- 국제교류 활성화로 인해 도민의 국제화의식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증대 방안 마련
- 도와 시·군 간 국제교류역량 격차는 심한 편 → 실질적 협력과 역량 격차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협력체 필요
- 동아시아에서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의의가 있는 분야에서 국제협력 행동 추진
- 충남의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공외교 정책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남 공공외교의 전략화가 필요
-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8,000,000원	3,988,200원	4,011,800원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연차 연구모임으로 17년 정산서는 심의완료

○ 집행내역

〔2017년도〕

(단위 : 원)

일 자	지출액	지출내역	비 고
계	<b>2,488,600</b>		
17. 3. 9.	44,000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17. 3. 9	200,000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만찬	
17. 3. 9.	7,700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생수 구입	
17. 4. 26.	160,000	2차 연구모임 숙박비	
17. 4. 26.	32,900	2차 연구모임 소요 음료 구입	
17. 4. 26.	425,000	2차 연구모임 만찬	
17. 12. 6.	22,000	연구모임 현장방문 소요 생수 등 구입	

일 자	지출액	지출내역	비 고
17. 12. 6.	160,000	연구모임 현장방문 오찬(1일차)	
17. 12. 6.	200,000	연구모임 현장방문 만찬(1일차)	
17. 12. 6.	56,000	연구모임 현장방문 조찬(2일차)	
17. 12. 6.	412,000	연구모임 현장방문 오찬(2일차)	
17. 12. 6.	170,000	연구모임 현장방문 만찬(2일차)	
17. 12. 6.	100,000	연구모임 현장방문 참석수당	
17. 12. 6.	44,000	연구모임 현장방문 현수막 제작	
17. 12. 20.	44,000	3차 연구모임 현수막	
17. 12. 20.	100,000	3차 연구모임 참석수당	
17. 12. 21.	8,000	3차 연구모임 생수 구입	
17. 12. 21.	303,000	3차 연구모임 오찬	
최종 잔액	<b>2,511,400</b>		

[ 2018년도 ]

(단위 : 원)

일 자	지출액	지출내역	비 고
계	<b>1,499,600</b>		
18. 3. 9.	44,000	4차 연구모임 현수막	
18. 3. 9	325,000	4차 연구모임 오찬	
18. 3. 9.	563,600	4차 연구모임 참석수당	
18. 5. 16.	567,000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	
최종 잔액	<b>1,500,400</b>		

※ 참석수당 1인 100,000원

####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 **2**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 구성원 : 16명(의원 8, 전문가 8)
  - 대표 : 김문규 의원
  - 간사 : 윤정미(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회원 : 강용일 의원, 김명선 의원, 송덕빈 의원, 유병국 의원, 김복만 의원, 김응규 의원, 홍재표 의원, 추욱(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최선희(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자원식품과장), 박종숙(한국여성농업인충남연합회(회장), 박인주(천안 여성농업인 회장), 오미란(젠더&공동체(대표), 서정민(지역순환경제센터장) 태희원(여성정책개발원)
- 연구목적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시책 및 실태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제고 정책 개선책을 마련코자 함
- 등록일 : 2018. 1. 23.
- 연구회 운영지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마련
- 연구기간 : 2018년 1월 ~ 5월(5개월)
- 예산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 분석을 통한 삶의 질 개선방안
  - 복지 실태 현황 및 쟁점도출, 개선방안 논의
  - 심도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3. 활동결과

####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1차 회의	2018.2.19.(월) 11:00~ 도의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 상견례 및 안내</li> <li>· 충남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 추진정책</li> <li>·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 및 추진정책</li> <li>· 충남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참여 사례연구</li> </ul>	
정책토론회	2018.3.5.(월) 14:00~ 천안시 성환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방안</li> <li>·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의 방향</li> <li>· 행복바우처 확대 및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필요</li> <li>· 농촌의 일손부족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위치 제고</li> </ul>	

#### ○ 연구내용

- 의회 및 여성농업인 복지 전문가가 함께 농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농업인복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다면적 연구 활동을 계획·추진함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시책 및 실태를 분석,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현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 충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농업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복지 사업발굴,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추진 방안 모색

####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2,996,080원	3,92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지출액	지출내역	비 고
<b>총 계</b>	<b>2,996,080</b>		
18. 2. 27.	6,600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생수 구입	
18. 2. 27.	211,000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오찬	
18. 2. 27.	434,800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참석자 수당	
18. 2. 27.	150,200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인쇄	
18. 2. 27.	44,000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18. 3. 9.	795,000	토론회 회의자료 인쇄	
18. 3. 9.	41,280	토론회 차재료 구입	
18. 3. 9.	275,000	토론회 현수막, 표찰 등 제작	
18. 3. 9.	6,600	토론회 생수 구입	
18. 3. 9.	751,800	토론회 참석자 수당	
18. 5. 16.	280,000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인쇄	
<b>최종 잔액</b>	<b>3,920</b>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 **③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 구성원 : 9명(의원 6, 전문가 3)
  - 대표 : 이공휘 의원
  - 간사 : 최돈정(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회원 : 김연 의원, 홍재표 의원, 조치연 의원, 유찬종 의원, 오배근 의원, 김영훈(한국교원대 교수), 이경주(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연구목적 : 충청남도 안전과 교통 분야의 공공 빅데이터와 모바일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충남형 분석지표 개발
- 등록일 : 2018. 1. 23.
- 연구회 운영지원 : 행정자치위원회

####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 연구기간 : 2018년 1월 ~ 5월(5개월)
- 예산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 공공빅데이터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빅데이터분석과 활용방안 모색
  - 심도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3. 활동결과

#### ○ 추진경과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비 고
1차 회의	2018.3.15.(목) 15:00~ 도의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 상견례 및 안내</li> <li>· 2017년 의원 연구모임 경과보고</li> <li>· 융복합 빅데이터 지역현안 적용 관련 연구주제 소개</li> <li>· 타시도 적용사례 소개 및 질의 답변</li> </ul>	
워크숍	2018.4.27.(금)~4.28.(토)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구축 현장 벤치마킹</li> <li>·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사례 강연 및 질의답변</li> <li>· 광주 광산구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사항 청취</li> <li>· 통계청 공간통계서비스 사업 배경 및 경과 공유</li> </ul>	

#### ○ 연구내용

- 행정자치부의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과 국토지리정보원의 100m by 100m의 격자체계, sk유동인구 빅데이터, 천안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천안시 교통사각지대분석’ 을 시행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정류장 우선 설치지역 후보지 선정
- 선정된 후보지 지역들은 총 4개 지역으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 양령리 · 도하리 · 안궁리 · 동남구신안동(신부동) · 원성1동(원성동), 동남구 청룡동(구성동, 유량동) 지역임

####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2,759,920원	240,08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일자별	지출액	지출내역	비고
계	2,759,920		
18. 3. 15.	351,400	연구모임 참석수당 지급	
18. 4. 27.	45,220	연구모임 워크숍 다과 등 구입	
18. 4. 27.	801,300	연구모임 워크숍 숙소, 조찬	
18. 4. 27.	482,000	연구모임 워크숍 만찬 간담회	
18. 5. 23.	1,080,000	연구모임 인쇄물 제작	
최종 잔액	240,08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참고]

**2018년 의원연구모임 예산 집행현황(모임별 · 항목별)**

(단위 : 원)

연번	연구모임 명칭	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식비	수당 (여비)	인쇄비	기 타 (현수막등)	
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3,000,000	4,499,600	325,000	563,600	567,000	44,000	1,500,400
2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3,000,000	2,996,080	211,000	1,186,600	1,225,000	373,480	3,920
3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3,000,000	2,759,920	8015,300	351,400	1,080,000	527,220	240,080
	합 계	9,000,000	7,255,600	1,337,300	2,101,600	2,872,000	944,700	1,744,4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의회위원이 지방자치발전과 충청남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업무중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위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모임을 말한다.<개정 2011.03.16>

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의원 5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1.03.16, 2013.4.10.>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충청남도지사가 설립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3.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이 아닌회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되 간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제12조제1항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 및 제12조제2항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6.9.12>

③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 기간내에 2개 연구모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1.03.16>

④ 연구모임 명칭은 연구모임 앞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명을 붙여 사용하며, 주제는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⑤ 연구모임은 등록취소가 되지 않는 한 당해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활동한다.

제4조(연구모임의 등록)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의회위원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 보고서에 등록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모임의 등록을 할 수 없음을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1.03.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하며, 제3항에 의해 대표의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모임등록서를 변경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

③ 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이하 "등록연구모임"이라 한다) 대표는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 또는 대표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모임 의원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6. 9. 12>



- ④ 연구모임 등록사무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보좌한다.<개정 2011.01.18>
- 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모임을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14.6.20 >

- 1.연구주제·목적이 달성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연구주제·목적이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도정발전에 배치되는 경우
- 3.제3조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이 미비한 경우
- 4.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1.3.16>

제6조(심의위원회) ①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 9. 12>
- ④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4.6.20>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연구과제 등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연구활동비의 배분·회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
- 4. 연구활동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연구모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07.28>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등록연구모임이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차 연구모임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12>
-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구모임당 연간 500만원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활동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성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연구모임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등과 그 밖의 경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과 그 밖의 경비

⑤ 연구활동비는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 및 전년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⑥ 삭제 <2009.07.28>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제8조제3항의 지원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1.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한 때
2. 연구활동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 4.10.>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4.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연구모임은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되, 전문가에 대한 자문경비는 연구활동비를 활용해야 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기준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충청남도 일반회계를 따른다.

⑥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기간 동안 자료정리와 의정활동비 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연구모임 등록 당시의 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9.07.28, 2011.03.16>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등) ①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에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기간) ①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기간은 의장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통지한 날부터 시작되며, 당해 연도 사업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1.05, 2014.6.20>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제12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 31일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선거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9. 12>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비정산서를 각 15부씩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개정 2013.4.1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정산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4.10.>

제13조(연구모임 등록의 취소)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과제 외의 연구활동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1.03.16>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활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